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공사시방서

본 시방서는 2015년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1. 도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즉시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는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교통 안전시설 기준에 의거 가설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발생토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에게 시공결과를 보고하고 토사 반출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 후 반출한다.
4. 중간집하장은 설치 시 바닥콘크리트와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본 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와 타 현장의 건설폐기물이 절대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혼합되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처리하거나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추후 반입계근표에 의거 준설량을 정산한다.**
7.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마스크, 방독면, 가스검지기)를 갖추고 작업하며 현장 내에서는 화기를 금한다.
8. 발생하는 준설토 중 양질토는 분리 적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매립지나 공사장 성토재료로 활용 할 수 있다.
9. 도급자는 준설토 처리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 처리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정상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여 발주처의 재산에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 이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도급자가 진다.

10. 준설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준설토재생업, 준설토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탁처리시 계약서 사본(원본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불법매립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 도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운반·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 발주처와 중간처리업자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급자가 1부 보관한다.
12. 준설토 운반시 수집·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다.
13. 운반시 적재함은 지정 차량으로 하고 수집운반 장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14. 본 민영준설토 수량은 추정 물량이며 중간집하장에서 폐기물재생 처리 업체로 운반 처리된 송장원본(계근표)에 의거 확인된 수량으로 정산처리 한다.
15.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구청)의 별도 지침 설정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6. 도급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장비 보유 현황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장비를 우리구에 상주시켜야 한다.
17. 준설토 중간집하장은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으로 하며 수시 소독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성북구 경리관은 계약자에게 수시로 작업을 지시하고 계약자는 작업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기한내에 작업지시 물량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후 경리관에게 작업완료 보고 하여야 한다.
 - (1) 작업 기한내에 작업을 이행치 않을 때는 매회 작업지시된 물량에 대하여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 (2) 대금청구는 매회 작업완료 보고서(작업 이행물량)에 의거 계약자가 필요시 일괄 하여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상 각 공종별 물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계약물량 범위내에서 실 작업 물량에 대해 정산 지출한다.
3. 성북구 경리관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5.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 부서에서의 관계자를 현장에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 토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6. 공사 작업지시는 성북구 경리관이 안전치수과장에게 위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지시한다.
 - ※ 발생 준설토에 대하여 공인 시험소에 시험의뢰를 실시 재활용 준설토로 활용이 어려울시 처리업소를 재활용업체에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변경할 수 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 (1) 본 시방서는 성북구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작업에 적용한다.(이하 작업이라 한다.)
- (2)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한다.
- (3)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 (1) “지시”는 우리구의 명에 의한 감독원이 수급인에게 감독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3) “협의”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등의 준수

-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을 우리구와 타기업(공사)등과 체결하고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 (나) 도로법
 - (다) 하수도법
 - (라) 건축법
 - (마) 도로교통법
 - (바) 하천법
 - (사) 환경정책기본법
 - (아) 폐기물관리법
 - (자) 건설산업기본법
-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와 제출서류

- (1)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 할 수도 있다.)
- (2) 수급인은 계약체결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 (나) 착공계
 - (다) 공정표
 - (라) 도급내역서
 - (마) 시공계획서
-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준공계
 - (나) 작업기록사진
 - (다) 준공도서
 -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 (1) 수급인은 빗물받이 전용 진공흡입식 장비를 이용하며 항상 작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빗물받이 전용 진공흡입식 장비를 현장에 계속 상주시켜야 한다.
(위반시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 (3) 수급인은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종사 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계속 상주)
- (4)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 (5)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 (1) 수급인이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보수등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한다.
- (2) 수급인은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 (2) 공정관리를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 (3)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 (4)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5)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도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 시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9. 작업 기록 사진 제출

- 수급인은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는,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 (1)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 (4) 작업중 사고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 (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4) 수급인이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할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5) 작업시 도로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후 세정 청소한다.
- (6) 작업완료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작업 및 지시

가) 작업지시의 일반적 기준

- 간선 및 지선도로 : 진공흡입식 준설(주간 또는 야간작업)

(1) 작업시간 :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흡입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실시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수관으로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토사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다) 중간집하장 확보 : 수급자는 중간집하장을 확보한 후 준설토를 처리한다.

(라) 중간집하장은 현장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검토하는 곳으로 배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준설토 임시사토장(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에서 일정기간 수분을 제거하여 지정구역에 처리한다.

(5) 세정수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량·탄천 하수처리장 또는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6)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제5장 기타

1. 작업의 완료

-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된 것을 지정된 사토장에 반출한다.

2. 검사

- 준공(기성)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3. 규정이외의 사항

- (1) 계약서, 지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